

무배당하나머니플랜보험

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

이 유 서

경쟁력 있는 저축성 상품의 개발을 통해 최초 허용되는 방카슈랑스 고객에게 양질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배당하나머니플랜보험을 개발코자 함.

확 인 서

무배당하나머니플랜보험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, 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. 끝.

2003년 8월 일

하 나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

확인업무담당계리인 윤 기 수

사 업 방 법 서

(사업방법서 별지)

무배당하나머니플랜보험

1. 보험종목의 명칭

무배당하나머니플랜보험

2. 보험료 납입기간, 보험기간

보험기간	보험료 납입기간
7년만기	3년·5년·7년납
10년만기	3년·5년·7년·10년납

3. 가입연령

만 15세 ~ (70 - 년만기) 세

4. 보험료 납입주기

월납

5. 납입보험료 한도

- 기본보험료 - 1구좌 당 월 40만원 ~ 100만원
- 추가납입보험료 - 연간 기본보험료의 100% 이내로 함.

6. 배당에 관한 사항

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음.

7.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

월납보험료 × 12 × min { 보험료납입기간, 10 }

8. 저축계약의 부리이율에 관한 사항

-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「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-1.5%」로 하고, 약관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약관대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.
- ② 부리이율은 연복리 3.0%를 최저한도로 한다.
- ③ 3년 미만 경과 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.

보험료 납입경과기간	중도해지이율
1년 미만	연 3.0% 복리
2년 미만	「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-1.5%」의 80%
3년 미만	「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-1.5%」의 90%

9. 기초율 변경시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

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 인하나 보험금 증액 등을 할 수 있다.

10. 부가하는 특약

무배당정기특약, 무배당재해사망특약, 무배당재해상해특약, 무배당입원특약Ⅱ, 무배당암보장특약

11. 기타

가.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

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, 인출 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.5%로 한다.

- ① 계약자가 퇴직한 경우
- ②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휴업
- ③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
- ④ 계약자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생시
- ⑤ 계약자가 소득이 감소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
- ⑥ 기타 계약자가 가계생활자금, 학자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립액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
단, 이 경우 적립액의 인출은 해약환급금의 25% 범위 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년 4회에 한함.

나. 연체이자율

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「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- 1.5%」를 적용함.

다. 선납보험료

선납보험료는 당월 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, 선납보험료는 월납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.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 일로부터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된 이율로 부리 적립하며, 당해 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.

라. 동 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영한다.

(별첨 제 1 호)

보험증권의 서식

(별첨 제 2 호)

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